

대전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나1006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고, 항소인 A

변론 종결 2021. 3. 3.

판결 선고 2021. 3. 24.

제 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108175 판 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84,701,7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70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는 부분 및 18,465,7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84,701,78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할 것과 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39,701,78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18,465,7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8,465,78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전부 인용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항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은 제외한다).

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B이 자금난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그 담보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총 2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고 변제능력을 살펴 순차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4,800만 원만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살피건대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B이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4,800만 원 중 8,016,466원을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등 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단 E에 변제한 8,016,466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신규로 물품을 주문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는 등 거래처에 대하여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B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와 그에 첨부된 계좌내역만으로는 Y나,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에 송금된 금원이 이미지체된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신규 물품 주문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피고도 일부는 기존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새로이 공급받은 물품의 품목이나 그 수량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제1심에서 확인된 금액만 1,877,538,747원에 이르고, 거기에 거래처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연체된물품대금 채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대여한 4,800만 원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도저히 모자란 금액인데다가, B은 대여받은 금액이 4,8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피고의 주장대로 순차적으로 대여할 계획이었다면 이후 추가 대여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약 5개월만에

사업의 근간이 되는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처분한 사정(가격이나 매매조건 협상, 대출 상담 등 통상적인 거래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 자금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등을 종합해 보면, B이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유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세진, 판사 강지엽

부동산의 표시

1. 천안시 서북구 O 대 2166㎡
2.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패널)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219.52㎡
3.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Q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패널)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212.52㎡
4.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R
천안시 서북구 S
T아파트 U동
[도로명주소]
천안시 서북구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2층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W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7층 X호 127.114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R 대 24247㎡
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S 대 248.6㎡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4495.6분의 64.6756 끝.